

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

제정 2025.12.1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소속 학과(부)에서 개발·제출한 교육과정안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무) ① 위원회는 본 대학 교직원과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,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③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대학 소속 학과(부)의 교육과정 심의 개발에 관한 사항
2. 본 대학 소속 학과(부)의 교육과정 제정 개편에 관한 사항
3. 본 대학 소속 학과(부)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의안발의) ① 총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발의한다.

- ② 교수, 학과(부)장 또는 위원이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- ③ 총장은 보고된 의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④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.
- ⑤ 회의에서 의결되어 총장이 승인한 교육과정은 해당 학과(부)의 교육과정으로 확정된다.

제7조(분과위원회, 연구위원회) ① 총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- ② 분과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결정한다.

③ 분과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의 활동결과에 관하여는 총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제9조(기타)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